

2018년도 대한수면연구학회 연구상 계획

대한수면연구학회

2017년 12월 30일

회장: 남현우

연구이사: 윤창호

1. 연구비지원 목적

대한수면연구학회(이하 학회) 회원들에게 연구상을 지원함으로써 수면의학(과학) 연구 저변 확대와 연구 활성화를 통해, 연구 분야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 수면 건강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일반원칙

가. 연구 과제는 공모를 통해 4건을 선정한다.

- 연구과제의 응모: 정해진 양식에 따라 연구위원회에 제출한다.
- 과제 응모 기한: 1월 15일 - 2월 15일
- 과제 평가: 2월 15일 - 3월 두 번째 금요일
- 과제 선정 및 통지: 3월 마지막 금요일

나. 각 과제 당 지원 금액은 5백만원(원천징수세액 공제 후)으로 한다.

다. 응모 연구 과제 평가 책임자(연구이사) 및 책임자 소속 기관의 연구자는 과제 지원을 제한한다.

마. 연구 보고서: 연구 보고서는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 SCI(E)급 학술지 혹은 대한수면연구학회 공식 학술지(Journal of Sleep Medicine)에 발표한 논문으로 한다. 단, 발표논문에 연구비지원 기관이 대한수면연구학회임을 명시해야 한다.

3. 연구 지원 대상 및 자격

가. 연구 주제는 수면의학, 수면생리, 수면병태 생리, 수면건강 등 수면과 관련된 분야의 기초, 중개, 임상연구로 한다.

나. 신청 자격

- 1) 대한수면연구학회 회원으로 연회비를 완납한 자
- 2) 직급이 부교수 이하인 자
- 3) 제외자

- 연구 기간 중 연구책임자가 3개월 이상 장기출장(연수)를 계획하거나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사업기간(2017년 - 2021년) 중 1회 과제에 선정된 책임연구자

4. 연구상금

지출 권한 및 이에 따른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원천징수세액 공제 후 총액 5백만원)

5. 연구과제 선정 기준

가. 평가 항목 및 배분율

평가항목	배분율	설명
연구배경 및 목적	30점	연구위원회 평가
연구내용	50점	연구위원회 평가
책임연구자 직급	10점	부교수 0점, 조교수 이하 10점
연구실적	10점	최근 3년 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SCI(E) 저널 및 수면연구학회지에 출간한 원저/단신보고(증례보고)/종설 1편 당 4점/2점/2점 부여. 공동 주저자 또는 공동 교신저자인 경우도 각 논문 해당 점수 100% 반영. 최대 20점.
총점	100점	

6. 연구 과제의 선정 절차

연구 이사가 위촉하는 심사위원들이 연구위원회에서 정한 심사 평가서에 의거 연구계획서를 심의하여 2건을 선정한다. 1차 선정된 연구계획서를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연구의사가 심의하여 최종 1건을 선정한다.

7. 연구보고서 제출

○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를 연구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SCI(E)급 학술지 혹은 혹은 대한수면연구학회 공식 학술지(Journal of Sleep Medicine)에 발표하고 해당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결과의 발표물에는 연구비지원 기관이 대한수면연구학회임을 명시해야 한다.

10. 관리사항

○ 연구계획서의 내용이 연구계획서 제출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거나, 심사완료 또는 심사 중인 석. 박사 논문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연구 계획서로 제출할 수 없음(단, 연구기간과 일치 또는 종료 후에 취득할 석.박사 학위논문일 경우에는 연구내용이 동일하여도 인정됨)

○ 연구보고서는 연구책임자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에 한하여 인정함

○ 본 계획의 제반사항 중 해석상의 의견이 상이할 시는 연구위원회의해석에 따름

○ 연구 실패의 경우에는 연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해당 제재(연구과제 공모 제한 등) 및 연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된 연구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연구보고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책임연구자는 사유서를 학회(연구위원회)에 제출하여 하며, 연구위원회는 회장 승인 하에 보고서 제출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음. 최종 기일(연구 종료 후 2년 또는 3년 이내)안에 종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학회는 지급된 연구비의 최소 50%를 환수하고, 책임연구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단. 부득이한 사유(건강상의 문제)에 의한 경우, 학회 판단의 의거 보고서 제출 기간을 연장하거나 환수를 유예할 수 있음.